

주주님께

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

주주님의 건승과택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당사는 상법 제 363 조와 정관 제 20 조에 의하여 제 11 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오며, 「상법」 제 542 조의 4 및 당사 정관 제 22 조 제 2 항에 의거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 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소액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금융감독원 전자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

- 아 래 -

1. 일 시 : 2022 년 3 월 25 일(금) 오전 11 시 00 분

2. 장 소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 번길 15(삼평동, 판교세븐벤처벨리 1 단지 1 층) 대회의실

3. 보고사항 : ① 감사보고, ② 영업보고, ③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

4. 회의 목적사항

- 제 1 호 의안 : 제 11 기(2021.1.1~2021.12.31) 재무제표 승인의 건

(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(안) 포함, 주당 현금배당 예정액 : 500 원)

- 제 2 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 (별첨 1)

제 2-1 호 : 사내이사 박기담 선임의 건(신규)

제 2-2 호 : 기타비상무이사 임현철 선임의 건(신규)

- 제 3 호 의안 :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(별첨 2)

- 제 4 호 의안 : 정관 변경의 건 (별첨 3)

5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주주님께서 주주총회에 참석하시거나 전자투표를 이용하여 직접 행사하실 수 있고, 위임장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
6. 경영참고사항 비치

상법 제 542 조의 4 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사, 한국예탁결제원, 금융위원회, 증권거래소에 비치 및 정보통신망에 게재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

7.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

- 직접행사 : 주총참석장, 신분증

- 대리행사 : 주총참석장,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인감날인), 대리인의 신분증

2022 년 3 월 10 일

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28 번길 15(삼평동, 판교세븐벤처벨리 1 단지 원스동)

(T. 031-622-8600, F. 031-622-8601)

주식회사 원스

대표이사 김 보 연 (직인생략)

별첨 1. 이사의 선임

후보자	생년월일	이사/ 감사위원	주된 직업	약력
박기담	71.11.10	사내이사	(주)원스 사업 2 부문장	한양대 기계공학과 성균관대 정보보호과 석사 (주)대우정밀 연구소
임현철	82.02.16	기타비상무이사	KCGI 전무이사	연세대 경영학과 LK 투자파트너스 운용본부 이사

별첨 2. 이사의 보수한도(안)

구 분	2021 년	2022 년
이사의 수(사외이사수)	10(4)	10(4)
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(원)	30 억	30 억
실 보수총액	17.1 억	-

별첨 3.

변경전	변경후	변경사유
제 8 조(주권의 발행과 종류) ① (생략) ② 회사의 주권은 1 주권, 5 주권, 10 주권, 50 주권, 100 주권, 500 주권, 1,000 주권 및 10,000 주권의 8 종류로 한다.	제 8 조(주권의 발행과 종류) ① (좌동) <삭제>	- 주권 전자등록의무화에 따라 삭제(전자증권법)
제 8 조의 2(주식등의 전자등록) 회사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	제 8 조의 2(주식등의 전자등록) 회사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. <u>다만,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	- 비상장 사채 등 의 무등록 대상이 아닌 주식등에 대해서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 을 수 있도록 단서신 설
제 12 조(신주의 배당기산일) 회사가 유상증자,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.	제 12 조(동등배당) 회사는 배당 기준일현재 발행(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)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.	- 동등배당 원칙 명시

제 17 조(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) ①~⑤ (생략)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 12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	제 17 조(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) ①~⑤ (생략) ⑥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.	- 이자 지급시기의 명확화
제 18 조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) ①~⑤ (생략) ⑥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 12 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	제 18 조(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) ①~⑤ (생략) <삭제>	- 동등배당 조항 신설에 따른 불필요
제 45 조(감사위원회의 구성) ① ~ ④ (생략) ⑤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⑥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,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⑦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	제 45 조(감사위원회의 구성) ① ~ ④ (좌동) ⑤감사위원회 위원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감사위원회 위원 중 1 명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. ⑥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상법 제 368 조의 4 제 1 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서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. ⑦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 ⑧ 감사위원회위원은 상법 제 434 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 4 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 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 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. ⑨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과 해임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 분의 3 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(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, 그 밖에 상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)는 그 초과하는 주식	개정 상법 제 542 조의 12 제 2 항 반영 개정 상법 제 542 조의 12 제 8 항 반영

	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	
<신설>	부칙 (2022.03.25.) 이 정관 개정안은 2022 년 3 월 25 일부터 효력을 가진다.	

위임장

본인은 2022년 03월 25일에 개최하는 (주)원스의 제 11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권유자 (주)원스가 지정하는 [이원근]을 그 대리인으로 정하고 다음의 내용과 같이 찬반표시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.

- 다 음 -

1. 주주번호 :
2. 소유주식수 : _____주
3. 의결권 있는 주식수 : _____주
4. 위임할 주식수 : _____주
5. 주주총회 목적사항 및 목적사항별 찬반 여부

번호	주주총회 목적사항		찬성	반대
1호	제 11기(2021.01.01 ~ 2021.12.31) 재무제표 승인의 건 (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(안) 포함, 1주당 현금 배당 예정액 : 500 원)			
2호	이사 선임의 건	제 2-1호 : 사내이사 박기담 선임의 건(신규)		
		제 2-2호 : 기타비상무이사 임현철 선임의 건(신규)		
3호	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			
4호	정관 변경의 건			

6. 새로 상정된 안건이나 변경·수정 안건 등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위임

- 주주총회 시 새로이 상정된 안건이나 각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이 상정될 경우에는 대리인이 주주의 의사표시가 위 5번 항목에서 표시된 찬반의 취지에 합치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것을 위임합니다.
- 다만 아래에 명시적으로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아래의 지시한 대로 의결권을 행사하겠습니다.

항 목	지 시 내 용

주주명 : (인)

주민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 :

위임일자 및 위임시간: 2022년 월 일 시